

## 【 22 】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출일자 2006. 4.

제출자 양주시장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 공포, 2006.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범위와 그 대상을 지정. (안 제12조)
- 나.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함. (안 제15조)
- 다. 행정재산 등의 관리 위탁시 주민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
- 라. 토지의 지하 및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 산출 하도록 함. (안 제29조)
- 마. 건물 대부료의 산정에 따른 합리적·객관적인 산출기준 마련. (안 제31조)
- 바. 공유재산의 임대료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함. (안 제34조)
- 사.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사전안내와 의견제시 기회부여로 권리침해 예방 및 변상금 분할 납부로 주민 부담 경감. (안 제61조)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 만원이하의 재산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 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 · 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 · 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 보존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 · 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 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 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 · 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 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 · 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잡종 재산

##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7항부터 제19조9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 ·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 ·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 · 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이상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

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 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 사업소, 읍·면·동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혀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7조관련)

## 1. 시의 본청

##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기관별 구 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시 본 청	99	56.16	38.88	17.92	7.65	7.2
읍 청 사	33	17.92	-	17.92	7.65	7.2
면 청 사	33	14.80	-	-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 ~ 49명	50 ~ 99명	100 ~ 149명	150 ~ 199명	200명 이상시 면적 = 0.8m <sup>2</sup> × 사용인원		
	4 ~ 2.4m <sup>2</sup> /인	2.6 ~ 1.5m <sup>2</sup> /인	2 ~ 1.2m <sup>2</sup> /인	1.6 ~ 1m <sup>2</sup> /인	1.2 ~ 0.9m <sup>2</sup> /인			
상황실	시	2.64m <sup>2</sup>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 ~ 200명		200명 이상	기타부분을 포함하 여 기준총 면적의 27% ~ 33%		
		0.43m <sup>2</sup> / 인	0.40m <sup>2</sup> / 인		0.33m <sup>2</sup> / 인			
식 당	1.63m <sup>2</sup> × 공무원 수 × 0.3							
휴 계 실	2.0m <sup>2</sup>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m <sup>2</sup> × 민원담당공무원 수) × 1.1} + {(0.13m <sup>2</sup> ~ 0.2m <sup>2</sup> × 민원인 수 × 0.5)}					민원인 공간확장 가 능		
숙 직 실	1인	2 ~ 3인		4인 이상				
	15.12m <sup>2</sup> / 인	11.52m <sup>2</sup> / 인		8.64m <sup>2</sup> / 인				
자료실	(0.3 ~ 0.4m <sup>2</sup> ) × 공무원수							
창 고	0.72m <sup>2</sup> /인 ~ 0.85m <sup>2</sup> /인							
전 산 실	9.79m <sup>2</sup>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 대피시설	개소당 660m <sup>2</sup>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계기준					
공조 기계실	연면적	~ 3,000	3,000 ~ 7,500	7,500 ~ 13,000	13,000 ~ 18,000	18,000 ~ 23,000	23,000 ~
	연면적대(%)	4.5 ~ 7.0	4.0 ~ 6.0	3.5 ~ 4.5	3.0 ~ 4.0	2.5 ~ 3.5	2.3 ~ 2.8
총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총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 1,000		1,000 ~ 4,000	4,000 ~ 8,000	8,000 ~ 12,000	12,000 ~ 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 ~ 20,000		20,000 ~ 24,000	24,000 ~ 28,000	28,000 ~ 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2. 시의회청사

구 분	실 명	면적기준	비 고
의 원 실	a 의장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a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a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m <sup>2</sup> + 방청객 수 × 1.5m <sup>2</sup> 이상	
	b 회의실	의원 수 × 3.3m <sup>2</sup>	면적 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b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sup>2</sup>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m <sup>2</sup>	
	c 사무실	직원 수 × 7.2m <sup>2</sup>	
	c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sup>2</sup>	
	d 대기 실	의원	의원 수 × 2.5m <sup>2</sup>
	d 대기 실	기자	50m <sup>2</sup>
	d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sup>2</sup>	
	d 휴게 실	의원	의원 수 × 2m <sup>2</sup>
연 계 공 간	d 휴게 실	직원	직원 수 × 2m <sup>2</sup>
	d 휴게 실	방청객	방청객 수* × 2m <sup>2</sup>
	d 당직실	2인실 기준 15m <sup>2</sup>	
	d 화장실	시 : 45 ~ 47m <sup>2</sup>	
	d 기타	예비실(50m <sup>2</sup> )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로비·복도 ·계단	(a + b + c) × 30 ~ 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 3. 시의 종합회관

####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 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B	15~30 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li>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나.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1) 공연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극장	객석	480	400
	무대	290	240
	연습실	55	55
	분장실(남,여)	41	35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악실 (1)	14	12
	악실 (2)	14	12
	소계 ①	905	763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도구반입실	33	-
	영사실	48	40
	음향실	36	30
	기기실(무대)	36	30
	조명실	24	20
	측벽투광실	12	12
	방송중계실	12	10
	소계 ②	417	322
합계	계 ①+②	1,322	1,085
	공용부분	881	723
	합 계	2,203	1,808

##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아동실(2)	68	60
	부속창고	6	4
	소계 ⑤	142	12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청소년실(2)	40	35
	소계 ⑥	100	85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노인실(여)	60	50
	휴게실	36	30
	주 방	8	6
	건강상담실	30	24
	소계 ⑦	194	1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부녀실(2)	120	108
	부녀실(3)	35	35
	소계 ⑧	275	251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회의실(1)	90	70
	회의실(2)	90	70
	회의실(3)	70	70
	회의실(4)	40	35
	다목적실	174	144
	주 방	18	14
	기자재창고	18	14
	전시코너	36	30
	소계 ⑨	611	507
합계	계 ⑤ ~ ⑨	1,322	1,127
	공용부분	712	607
	합 계	2,034	1,734

### 3) 부대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작업실	43	35
	창고	43	35
	소계 ⑩	302	232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소계 ⑪	308	257
식당 휴게 시설	식당	85	70
	주방 및 창고	38	32
	휴게실	82	70
	소계 ⑫	205	172
합계	계 ⑩ ~ ⑫	815	661
	공용부분	349	283
	합 계	1,164	944

### 4) 체육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갱의실(남)	27	21
	샤워실(남)	27	21
	갱의실(여)	15	12
	샤워실(여)	14	12
	부속실(1)	72	60
	부속실(2)	48	40
	대기실	26	22
	장비실	145	120
	무대(집회용)	240	200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소계 ③	2,078	1,71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상부발코니	-	-
	소계 ④	720	60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공용부분	700	578
	합 계	3,498	2,890

## 5) 기타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관장실	64	64
	응접 및 탕비실	26	26
	소회의실	32	27
	숙직실	12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소계 ⑬	343	309
합 계	계 ⑯	343	309
	공용부분	185	166
	합 계	528	475

#### 4. 보건소

(단위 : m<sup>2</sup>)

구분	실 명	면적기준
		시보건소
진료 활동	a 접수 / 수납 의무기록창고 대기공간 약국조제실 약국창고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찰실 치과장비실 치과용 암실 소독실 예방접종실 소아돌이실 수유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13.86
		10.89
		48.00
		13.86
		13.86
		53.46
		17.80
		27.54
		2.70
		2.16
		8.91
		17.82
		9.90
		7.92
		31.68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상담실 방사선실	4.86
		17.82
		35.64
		81.66

구 분	실 명	면적기준
		시보건소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무 부문	d 소장실 전실(탕비실) 소회의실 사무실 다목적실 창고 여자휴게실 당직실 화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9.90
		17.82
		직원 수 × 7.2 m <sup>2</sup>
		144
		59.4
		40
		13.86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 ~ 40%

##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sup>2</sup>)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u>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u>	<u>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u>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전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양주시</u>(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 - - - -</p>
<p>제2조(관리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li> <li>② (생략)</li> <li>③ &lt;신설&gt;</li> </ul>	<p>제2조(관리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양주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i> <li>② (현행과 같음)</li> <li>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li> </ul>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수임·처리한다.</p> <p>② &lt;신설&gt;</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u>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41조(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6조(<u>시공유재산심의회</u>) ① <u>법 제78조의</u>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u>양주시조례·규칙심의회</u>에서 대행한다.</p>	<p>제4조(<u>심의회의 구성</u>)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u>시정조정위원회</u>에서 대행한다.</p>
<p>제6조(<u>시공유재산심의회</u>) ① <u>법 제78조의</u>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양주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영 <u>제78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페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li> <li>3. (생략)</li> </ol>	<p>제5조(<u>심의회의 업무</u>)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페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u>잔종재산의 용도변경</u></li> <li>5. (현행 4호와 같음)</li> </ol> <p>② <u>제1항의</u>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4. &lt;신설&gt;</p> <p>5. (생략)</p> <p>(3)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li> <li>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u>1천만원 이하</u>(특별시·광역시지역은 <u>3천만원이하</u>)의 재산 취득·처분</li> <li>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u>3천만원이하</u>의 재산</li> <li>나. 일반 시 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u>1천만원이하</u>의 재산</li> <li>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도농복합시 포함)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u>1천만원이하</u>의 재산</li> </ol> </li> </ol>	<p>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li> <li>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li> <li>3. 대장가액 <u>2천만원이하</u>의 재산 취득·처분</li> <li>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u>5천만원이하</u>의 재산</li> <li>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u>2천만원이하</u>의 재산</li> <li>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u>2천만원이하</u>의 재산</li> </ol> </li> </ol>
<p>&lt;신설&gt;</p>	<p>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3조 (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대부료 수납여부</li> <li>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li> <li>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li> <li>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li> <li>6. (생략)</li> </ol> <p>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p>	<p>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li> <li>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li> <li>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li> <li>5. 원상변경 여부</li> <li>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li> </ol>

<p>조치계획을 수립·시정하여야 한다.</p>	<p>7. (현행 6호와 같음)</p> <p>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li> <li>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li> <li>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li> <li>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li> <li>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li> </ol> <p>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제15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재산관리관은 영제 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li> <li>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li> <li>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li> <li>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li> <li>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제7조(재산의 집단화) (생략)</p>	<p>제9조 (재산의 집단화)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제28조 (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p>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제 5 장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u>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u>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u>시장이</u>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u>재산관리 전담부서에</u> 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u>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u>시장이</u> 다음 연도 - - - - -</p> <p>- - - - -</p> <p>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u>재산관리 총괄부서에</u> 서 - - - - -</p> <p>- - - - -</p>
<p>제3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때에는 <u>제8조의 규정</u>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lt;삭제&gt;</p>
<p>제3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u>제12조의 규정에</u>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 6 장 기 부 채 납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p>제4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 하여야 한다.</p> <p>② &lt;신설&gt;</p>	<p>① - - - - -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u>사용 허가대상</u>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 -</p> <p>- - - - - 사용 · 수의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u>영 제83조</u>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u>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u> 책정하여야 한다.</p>	<p>제17조(무상사용기간) - - - - -</p> <p>- - - - -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46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제47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lt;삭제&gt;</p>

<p>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여야 한다.</p>	
<p><b>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b>  <b>제9조 (관리 및 처분) (생략)</b></p> <p>제10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u>사용허가</u>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u>사용허가 하여야</u>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은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p>	<p><b>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b>  <b>제18조(관리 및 처분) (현행과 같음)</b></p> <p>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 - - -      - <u>사용·허가</u> - - - - -      - - - - - <u>사용·허가하여야</u> - - - - -      - - - - -      - - - - -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에 - - - - -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현행과 같음)</p>
<p><b>제11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b>  <u>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사용·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p>	<p>&lt; 삭제 &gt;</p>
<p><b>제12조 (사용·수익허가) (생략)</b></p>	<p><b>제20조(사용·수익허가) (현행과 같음)</b></p>
<p><b>제13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제2항의 규정에 의한</b>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b>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b> ① <u>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② <u>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u> 공공시설을 <u>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u> <u>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u> 의한 사용·수</p>	<p><b>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b>      ① <u>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u>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u>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u> <u>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u></p>

<p>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여야 한다.</p>	
<p><b>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b></p> <p>제9조(관리 및 처분)(생략)</p>	<p><b>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b></p> <p>제18조(관리 및 처분)(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u>사용허가</u>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u>사용허가하여야</u>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p> <p>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은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2(생략)</p>	<p>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 - - -  <u>사용·허가</u> - - - - -  - - - - - <u>사용·허가하여야</u> - - - - -  ② - - - - -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u> - - - - -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2(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사용·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p>	<p>&lt; 삭제 &gt;</p>
<p>제12조(사용·수익허가)(생략)</p>	<p>제20조(사용·수익허가)(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을할 수 있다.</p>
<p>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p>	<p>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p> <p>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p>

<p>의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03.4.15&gt;</p> <p>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p>
<p>&lt;신설&gt;</p>	<p>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의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6조 (연고권 배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잡종 재산</b> <b>제1절 대부</b></p> <p>제24조(연고권 배제) (현행과 같음)</p>
<p>제19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회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③ (생략)</p>	<p>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 -----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 ----- 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 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 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 제5호 및 제4항의 -----</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 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 제25호, 제39조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 -----</p>

<p><u>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17조의 규정에</u>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u></p> <p>4 ~ 6 (생략)</p>	<p><u>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u>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u></p> <p>4 ~ 6 (현행과 같음)</p>
<p><u>제21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u> ① <u>영 제92조의 규정에</u>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 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p> <p>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u>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u> 한다.</p> <p>③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u>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u> 정수한다.</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u>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u>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u></li> <li>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li> </ol> <p>⑤ 공유임야를 <u>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u>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⑥ <u>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u> 당해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⑦ <u>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u>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p>	<p><u>제28조(대부료의 요율)</u> ① <u>영 제31조의 규정에</u>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률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임목, 임산물 가격을 <u>대부료에 추가하여</u> 정수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u></li> <li>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li> </ol> <p>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li> <li>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li> <li>3. <u>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u>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li> </ol>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li> <li>2. <u>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u>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li> <li>3. <u>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u></li> </ol>

<p>수 있다.</p> <p>⑧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⑨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p> <p>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u>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u>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u>&lt;신설&gt;</u></p>	<p>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p>
<p>제24조 (토석채취료 등) ① <u>제21조제3항의 100분의 5로 한다.</u></p> <p>② ~ ④ (생략)</p> <p>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u>100분의 5이상으로</u> 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수 있다.</p>	<p>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u>제28조제1항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1000분의 50이상으로</u></p>
<p>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u>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u></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p>	<p>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u>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u></p> <p>② <u>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u></p> <p>③ <u>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u></p> <p>1. <u>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u></p>

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산출.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산출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p><u>나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u></p> <p>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u>감면</u>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나 ~ 사 (생략)</li> <li>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75퍼센트를 <u>감면</u> 가 ~ 바 (생략)</li> <li>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50퍼센트를 <u>감면</u>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li> </ol>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7항부터 제19조9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u>감면할 수 있다.</u>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나 ~ 사 (현행과같음)</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을 75퍼센트 <u>감면할 수 있다.</u> 가 ~ 바 (현행과 같음)</li> <li>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을 50퍼센트 <u>감면할 수 있다.</u> 가 ~ 라 (현행과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li> </ol>
<p>제26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li> <li>3. &lt;신설&gt;</li> <li>4. &lt;신설&gt;</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li> </ol>	<p>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li> <li>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li> <li>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li> </ol> <p>②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p>

<p>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p> <p>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u>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 ·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u></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전세금은 <u>영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 ·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u></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u>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u></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22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을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u>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u>지목상 전, 담을 경작용으로 사용 ·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u></p> <p>2. <u>생산 ·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 · 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u></p> <p>3. <u>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u></p>
<p>제27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u>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u></p> <p>1. 50만원 이상 : 3월 이내 2회 분납</p> <p>2. 100만원 이상 : 6월 이내 3회 분납</p> <p>3. 200만원 이상 : 9월 이내 4회 분납</p> <p>③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31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p> <p>1 ~ 10 (생략)</p>	<p>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p> <p>1 ~ 10 (현행과 같음)</p>
<p>제32조 (대부계약서) (생략)</p>	<p>제37조(대부계약서) (현행과 같음)</p>
<p>제2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 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li> <li>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 청에 매각 하는 경우</li> <li>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 비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li> <li>4.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li> <li>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li> </ol>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 한다.</p>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p>	<p>제2절 매각</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li> <li>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 청에 매각 하는 때</li> <li>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li> </ol> <p>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p>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

제39조 (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 2.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 3.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감면하는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 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 3.외국인 투자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 4.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 5.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율이 70%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감면하는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 내의 재산
- 2.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 3.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 50%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 4.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의 재산

### ② ~ ⑥ <삭제>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증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지(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용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p>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안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p>	<p><b>제3절 신탁</b></p> <p>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b>제 4 장 공유임야 관리</b></p> <p>제35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b>제5장 공유임야 관리</b></p> <p>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6조(처분의 제한) (생략)</p> <p><b>&lt;신설&gt;</b></p>	<p>제43조(처분의 제한) (현행과 같음)</p> <p>제44조(분수령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령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b>제 7 장 청사 관리</b></p> <p>제4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p>	<p><b>제6장 청사관리</b></p> <p>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청·사업소·읍·면·동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p> <p>② 부적당으로 한다.</p>

소·위치 부적합등으로 한다.	
제49조(청사의 부지)(생략)	제46조(청사의 부지) (현행과 같음)
제50조(청사등의 설계) ① (생략) 1 ~ 7 (생략) ② (생략) ③ <u>영 제3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50억 원 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u>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1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지방건축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제52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u>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u>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b>제8장 관사 관리</b>	<b>제7장 관사 관리</b>
제53조(정의)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보시장·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정의) ----- 보 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
제54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 3 (생략)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용허가)(생략)	제51조(사용허가) (현행과 같음)
제56조(사용책임)(생략)	제52조(사용책임) (현행과 같음)
제5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생략)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현행과 같음)
제5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는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두려고 하는 때 3. 사용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생략)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현행과 같음)
제5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1. ----- ----- -----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p>기본 시설비</p> <p>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p> <p>3. 보일러 운영비(다만, 1급 내지 3급 관사에 한함)</p> <p>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에 따른 경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p> <p>5. 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p> <p>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p> <p>7. 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p> <p>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p>	<p><u>(1·2급 관사에 한한다)</u></p> <p>2. - - - - - 재산유지 관리비(<u>1·2급 관사에 한한다</u>)</p> <p>3. 보일러 운영비(<u>1·2급 관사에 한한다</u>)</p> <p>4. - - - - - 유지 관리비에 따른 경비(<u>1·2급 관사에 한한다</u>)</p> <p>5. - - - (<u>1·2급 관사에 한한다</u>)</p> <p>6. - - - (<u>1·2급 관사에 한한다</u>)</p> <p>7. - - - (<u>1·2급 관사에 한한다</u>)</p> <p>8. - - - - - 공동관리비(<u>1·2급 관사에 한한다</u>)</p>
<p>제60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u>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u>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1조(비품의 관리) <u>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57조(비품의 관리) <u>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u></p>
<p>제61조(인계 인수 등) ① <u>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u></p> <p>1 ~ 3 (생략)</p>	<p>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u>제54조의 규정에 따라</u></p> <p>② - - - - -</p> <p>- - - - -,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3조(변상조치) (생략)</p>	<p>제59조(변상조치) (현행과 같음)</p>
<p>제64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3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보칙</b></p> <p>제29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u>영 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u>100조제6항의</u>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 시장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p>	<p><b>제5장 보칙</b></p> <p><u>제30조 (변상금의 청문등) ①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u>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 -</p> <p>에는</p> <p>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u> 의한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 - - - -</p> <p>에는</p> <p>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u>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u>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8장 보칙</b></p> <p><u>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u>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 - - - -</p> <p>에는</p> <p>- - - - -</p> <p>② <u>제1항의</u>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 - - - -</p> <p>에는</p> <p>- - - - -</p> <p><u>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u>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li> <li>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이내 분납</li> <li>3. 2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li> <li>4.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li> </ul>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u>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u>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li> <li>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li> </ol>	<p><u>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u>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을 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li> <li>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li> <li>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li> </ol>	

<p>자가 2인이상인 경우 먼저 신고한자에게 지급</p> <p>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이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 까지로 한다.</p> <p><u>④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u>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u></p> <p>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u>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현행5항과 같음)</p>
<p><u>&lt;신설&gt;</u></p>	<p><u>제64조(합필의 신청)</u>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자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u>&lt;신설&gt;</u></p>	<p><u>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u>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p>제 66조(준용) (생략)</p>	<p>제66조(준용) (현행과 같음)</p>
<p>제 6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p>	<p>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